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급분야	경력	<p>◇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4대 보험적용 사업장 근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p>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p> <p>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p> <p>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div>								
	구급관련 학과	<p>◇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p>								
구조	<p>◇ 군 특수전 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특수부대 :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p> <p>② 특수임무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 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 특수임무대 수방사 35특공대대</p> <p>③ 기타 특수전 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p> </div> <p>◇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구조대 또는 안전관리반 근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평사원(계약직 포함, 수습·견습·인턴 등 제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p>									
화학	<p>◇ 화학 관련분야 자격을 하나 이상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관련분야 자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기술사</td> <td>화공</td> </tr> <tr> <td>기능장</td> <td>위험물</td> </tr> <tr> <td>기사</td> <td>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td> </tr> <tr> <td>산업기사</td> <td>화학류제조, 위험물</td> </tr> </table>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학류제조, 위험물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학류제조, 위험물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차량정비	<p>◇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p> <p>- 자동차정비관련 자격</p> <table border="1" data-bbox="421 300 1190 510"> <tr> <td>기술사</td> <td>차량</td> </tr> <tr> <td>기능장</td> <td>자동차정비</td> </tr> <tr> <td>기사</td> <td>자동차정비</td> </tr> <tr> <td>산업기사</td> <td>자동차정비</td> </tr> <tr> <td>기능사</td> <td>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td> </tr> </table> <p>- 해당분야 경력 : 아래 ①, ②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p> <p>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p> <p>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p>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정보통신	<p>◇ 정보통신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p> <p>- 정보통신 관련분야 자격</p> <table border="1" data-bbox="421 835 1414 1046"> <tr>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td> </tr> <tr> <td>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기사</td> <td>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td> </tr> <tr> <td>산업기사</td> <td>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td> </tr> </table>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소방관련학과	<p>◇ 2년제 이상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p> <p>◇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p>										
도립대장학생	<p>◇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졸업 후 강원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p>										
법무 (소방경)	<p>◇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p>										
의무소방 전역(예정)자	<p>◇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전역예정일이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p>										
헬기조종 (소방위)	<p>◇ 「항공안전법」 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p>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p> <p>-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p> <p>※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p> <p>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p> <p>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p> <p>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p> <p>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소지자</p>										
헬기정비 (소방장)	<p>「항공안전법」 의거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p>										